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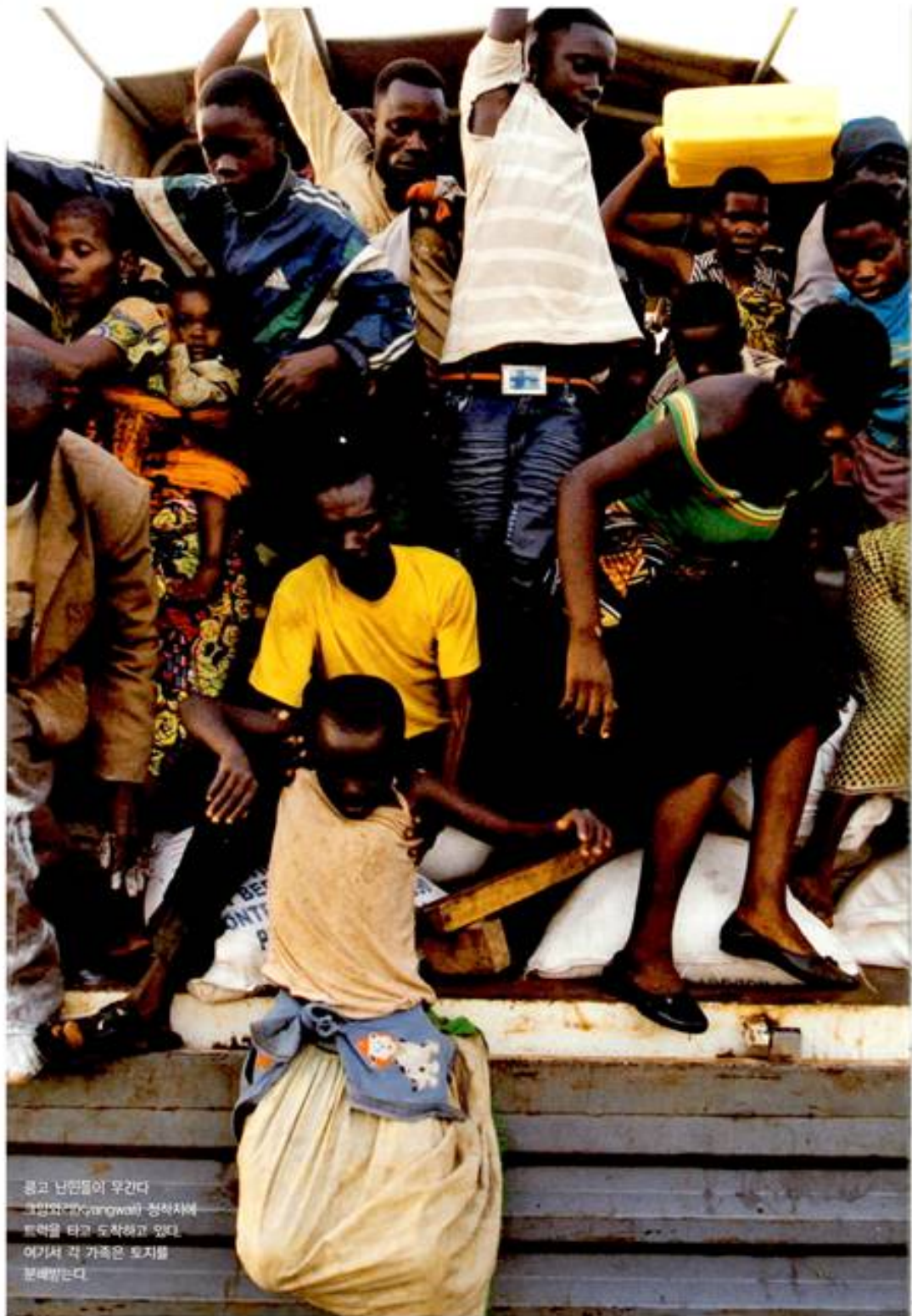
난민보호

유엔난민기구 (UNHCR) 의 역할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콩고 난민들이 무간다
크리위(Cryanawa) 정착지에
트럭을 타고 도착하고 있다.
여기서 각 가족은 토지를
분배받는다.

난민보호

유엔난민기구(UNHCR)의 역할

표지:

요르단으로 건너온
시리아 난민들이
자타리 난민촌
(Za'atari refugee
camp)에 들어오기
위해 통로를 기다리고
있다.



UNHCR / S. RIZOV

2 난민이란?

4 배경

10 국제통계

12 난민보호

13 1951년 유엔(UN) 난민협약

14 유엔난민기구(UNHCR)란?

17 유엔난민기구(UNHCR)의 역할 발전

19 위기상황에서 영구적 해결책까지

23 자주 묻는 질문들

26 유엔난민기구(UNHCR)의 운영 방식

28 한눈으로 보는 통계

도표

- | | |
|--------------------------------|-------------------------|
| 10 유엔난민기구(UNHCR)의 보호대상자 (2013) | 19 주요 활동지역 (2013) |
| 13 출신국 상위 10개국 (2013) | 20 자발적 귀환 상위 5개국 (2013) |
| 15 비호국 상위 10개국 (2013) | 22 재정착국 상위 5개국 (20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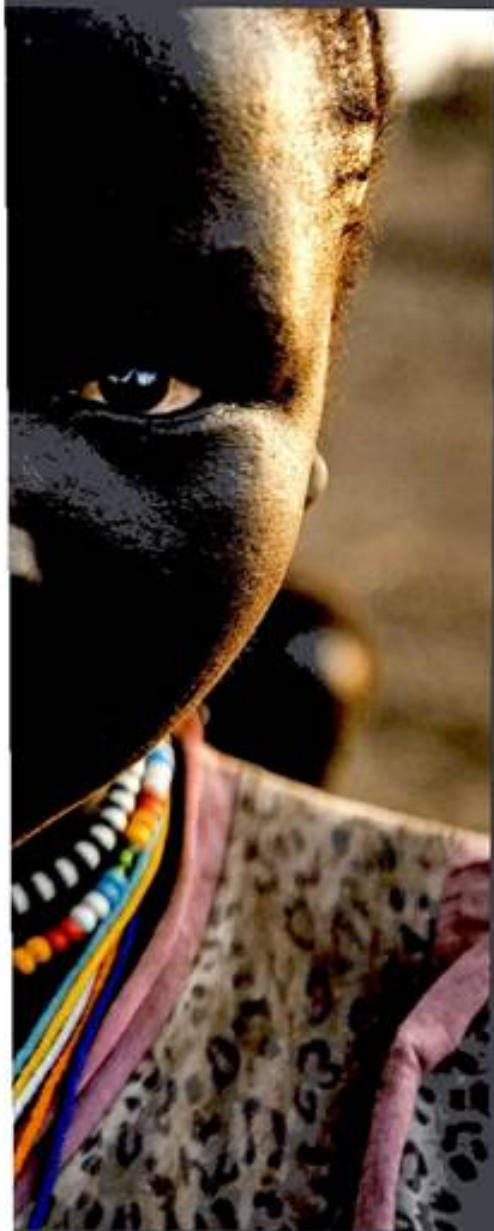
난민이란?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유엔(UN) 협약, 제 1조

UNHCR / S. KICH

남수단 도로 난민촌(Doro refugee camp) 내의 안전한 놀이터의 수단 난민들



인류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인종, 종교, 그 외 다른 이유로 고향인 도시와 마을에서 강제 추방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박해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에게 비호를 제공하는 것은 인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상징이다. 비호제공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히타이트, 바빌론, 아시리아 및 고대 이집트 등 중동지역에 거대 제국이 번성하던 시기에 작성된 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후 여러 세기에 걸쳐 많은 사례가 뒤따랐다. 그리고 20세기 들어 국제사회는 특히 유엔(UN)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도움을 성문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은 1950년 “난민” 보호를 핵심 임무로 하여 창설되었다. “난민”은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실향민을 일컫는 법적 용어다. 그러나 오늘날 복잡한 세상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살던 곳을 떠나 떠도는 집단이나 사람들이 있고, 이들을 부르는 이름은 비호신청자, 국내실향민(IDP), 무국적자, 또는 이주민으로 다양하다.

본 책자는 누가 난민으로 인정받고 어떤 권리를 부여받는지, 비호신청자, 국내실향민, 무국적자, 또는 이주민이란 누구인지, 유엔난민기구(UHCR)는 무엇이며 정부와 인도주의적 파트너와 협력해 이 취약한 집단을 법적, 실질적으로 돕고 보호하는 역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다룬다.

배경



2013년 8월,
며칠 만에 수천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이라크 쿠르드 지역으로
몰려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사람이 때로는 혼
합 이주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상
황에서, 난민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
법체계는 유례없는 압력을 받고 있다. 각국 정부는
정치, 경제, 안보상의 우려에 대응하여 국경을 더욱



엄격하고 강력하게 통제한다. 이 우려스러운 환경에서 난민을 이주민과 혼동하여 오해, 의심하거나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인 난민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전체 국제 보호 체계가 효과적

으로 기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난민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각 난민신청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시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보호대상자는 해당자에 대한 보호와 원조 필요성이 유엔난민기구(UNHCR)의 관심사가 되는 사람들로, 난민, 비호신청자, 무국적자, 일부 국내실향민과 귀환민을 포함한다.

난민은 앞서 정의한대로 무장분쟁이나 종종 자국 정부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적 또는 기타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로, 때로는 마을이나 공동체 전체가 되기도 한다.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 그들은 국경을 넘어 인근 국가에서 보호를 찾고 국제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가, 유엔난민기구(UNHCR), 혹은 기타 조직으로부터 공식 지원을 받는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는 위험이 커서 다른 곳에서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명한 이유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받는다.

비호신청자는 난민이라고 주장하나 그 신청에 대한 최종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다. 해당국의 비호체계, 또는 일부 경우 유엔난민기구(UNHCR)의 임무에 따라 신청자가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한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타 형태의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정받은 이들은 출신국으로 되돌려 보내질 수 있다.

모든 비호체계는 효율성이 핵심이다. 비호체계가 신속하고 공정하다면 자신이 난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애초에 신청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고, 이는 수용국과 해당 체계가 대상으로 하는 난민들 양쪽 모두에게 이롭다.



대량 난민의 이동(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박해의 성격을 띠 수 있는 분쟁이나 폭력의 결과로 보통 발생) 중에는 국경을 넘는 모든 개인의 비호 신청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할 역량이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해당자들이 왜 도망치는지 일반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개별 면접이 보통 필요하지도 않다. 결과적으로 해당 집단은 “사실상” 난민(*prima facie refugee*)으로 선언되는 경우가 있다.

국내실향민은 언론이나 일반대중이 난민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명칭에서 보듯, 국내실향민은 국경을 넘지 않고 자국 내에 남아있다. 때로는 자국 정부가 일으킨 분쟁이나 박해 등 비슷한 이유로 도망쳤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이



SHUTTER / GETTY IMAGES

비호를 신청한 한 가족이
실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가리아
소피아(Sofia) 보호소에
머물고 있다.

들은 동일한 해당 정부의 보호 하에 있으며 인권
법과 국제인도주의법상 보호받을 모든 권리를 보
유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기존 임무는 국내
실향민을 특정적으로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러
나 유엔난민기구(UNHCR)는 실향과 관련해 보
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해 어려해 동안 수 백
만 명의 국내실향민을 지원해왔으며 최근에는
기관간 '클러스터 접근법(cluster approach)'에
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 다른 인도주의적 기관과
협업하여 보호, 숙소, 캠프 관리 업무를 하고 있
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현재 시리아 아
랍 공화국, 콜롬비아,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을 포함해 24개의 국내실향민 지원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국내실향민
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구호 노력에 동참하며,
최근 2013년 필리핀의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재해
구호에 참여하였다.

무국적자는 어떠한 국가에 의해서도 해당 국가 법
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로 국적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 국적 없이는 광
범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무국적의 결과
는 극도로 심각할 수 있다.



귀환민은 자신의 출신국 밖에 있을 때 유엔난민기구(UNHCR)의 보호대상자였으며, 출신국으로 돌아간 뒤, 제한된 기간(보통 2년)동안 동일하게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 용어는 과거 거주지로 돌아간 국내실향민에게도 적용된다.

이주민, 특히 경제적 이주민은 직접적인 박해 또는 죽음의 위협이 아니라 주로 일자리를 찾아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혹은 일부 경우, 교육, 가족 재결합, 기타 이유로 이주를 선택한다. 따

라서 이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상 난민과는 다르게 처우 받아야 하며, 실제로도 다른 처우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이 난민과 동일한 이동 경로와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혼합 이주” 양상이 신규 도착민의 지위를 심사하는 당국에는 큰 어려움이 된다. 점차 커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는 출신국, 중간이동국(transit), 목적국을 다룬, 난민보호와 혼합이주에 관한 10개 행동계획을 개발했으며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는 난민과는 달리 이주민은 귀환에 장애물이 없다.

혼합 이주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우려사항이나 특히 지중해 연안, 아덴만, 중미, 카리브해 연안, 동남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 2013년에 아프리카의 뿔 지역, 즉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의 상황을 피해 65,000명 이상이 밀입국 브로키

에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개고자 한 수 천명의 이주민과
비호신청자들이 이탈리아
칼페두사(Lampedusa) 항구에
도착했으나 많은 이들이
그 과정 중에 목숨을 잃었다.

를 통해 아덴만을 건너 예멘으로 향했다. 중부 지중해 연안에서는 2013년 한해 60,000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이 바다를 건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몰타에 도착했으며 이 숫자는 2014년 상반기에만 75,000명 이상으로 치솟았다. 최근 몇 년간 이주를 위한 항해 중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엔난민기구(UN)

유럽

1,726,256

미주

5,951,237

❖ 출신국 또는 출신영토 밖에 있으면서 난민과 유사한 보호상의 위험에 직면해있으나 실제적인 또는 그 밖의 이유로 난민지위는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

❖ 국적국 또는 상주국 내에 있으면서 국내실태민과 유사한 보호상의 위험에 직면해있으나

실제적인 또는 그 밖의 이유로 보고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

❖ 귀환 난민과 국내실태민을 모두 포함.

❖ 유엔난민기구(UNHCR)의 무국적자 보호 업무에 속하는 자.

HCR)의 보호대상자

출신국별 총: 42,876,582명

[2013년 말 기준]

중동과
북아프리카

11,480,048

아프리카

13,024,491

아시아태평양

6,912,363

국제난민기구(UNHCR) 서비스

난민

비호신청자

국내실행민

귀환민

무국적자

기타

지역	난민	비호신청자	국내실행민	귀환민	무국적자	기타	총
아프리카	3,670,630	414,924	7,633,317	951,109	-	354,511	13,024,491
아시아태평양	3,921,851	287,820	1,910,344	435,748	-	356,600	6,912,363
중동 북아프리카	3,349,994	118,675	7,835,121	363,330	-	12,928	11,480,048
유럽	329,891	110,210	1,178,635	20,531	-	86,989	1,726,256
미주	501,335	69,414	5,368,138	18	-	12,332	5,951,237
다양 / 무국적	129,478	170,719	-	-	3,469,250	12,740	3,782,187
	11,703,179	1,171,262	23,925,555	1,770,736	3,469,250	836,300	42,876,582



방글라데시 내의 난민 소녀가 가족을 위해 물을 길어온다. 방글라데시에는 박해를 피해 미얀마를 탈출한 수 십만 명의 로힝야(Rohingya)족이 살고 있다.

난민 보호

난민 보호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피해자 달
아난 위험으로 되돌려 보내지지 않을 안전,
공정하고 효율적인 비호 절차에 접근, 기본적 인
권 존중을 보장하고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도
록 하면서 더욱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찾도
록 도와주는 조치 등이 여기 포함된다.

국가는 관련 지역 조약을 포함한 국제난민법상
의 의무에 따라 난민 보호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유엔난민기구(UNHCR)는 필요시 난민지

위를 심사하는 비호절차에 관해 정부에 자문과 지
원을 제공하며 긴밀하게 협조한다. 비호절차가 없
는 경우 유엔난민기구(UNHCR)는 임무 하에 난민
지위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

비정부기구(NGO) 또한 난민의 권리 옹호와
알려진 특정 기준이 충족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요 국제 NGO 뿐 아니라 매일
난민과 접촉하는 많은 현지 조직들도 여기 포함
된다.

1951년 유엔(UN) 난민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유엔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는 근대 난민보호의 초석으로, 이에 포함된 법률적 원칙들은 난민의 처우를 규정하는 수많은 다른 국제법, 지역법 및 국내법과 관행의 근간이 되고 있다.

1951년 협약에서 확립한 가장 중대한 원칙 중 하나는 난민을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제 33조)는 것이다. 난민협약은 또한 국가가 난민에게 부여해야 할 기본적 권리를 제시하며 누가 난민인지, 그리고 누가 아닌지를 정의한다(예를 들어,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또는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한다.
(제 1조 F)).

1951년 협약은 이주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며, 전적으로 난민 보호를 목표로 한다.

오늘날의 과제는 이주를 관리하고 국경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인데, 국가들은 이를 난민보호에 대한 자국의 책임과 세

출신국 상위 10개국

[2013년 말 기준]

국가명	난민*
아프가니스탄	2,556,600
시리아 아랍 공화국	2,468,400
소말리아	1,121,700
수단	649,300
콩고민주공화국	499,500
미얀마*	479,600
이라크	401,400
콜롬비아*	396,600
베트남**	314,100
에리트레아	308,000

* 난민 표시 상위에 있는 이름도 포함

** 약 300,000명의 베트남 난민들은 현지 통관국이 중국 정부로부터 실종자 보상을 받고 있다.

참고: 약 5백만 명의 소아시아 난민들은 1951년 유엔난민규약(UNHCR)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약 100,000명이 소아시아 난민들이 유엔난민기구(UNHCR)에 등록 되어 있다.

비호국 상위 10개국

[2013년 말 기준]

국가명	난민
파키스탄	1,616,500
이란 이슬람 공화국	857,400
레바논	856,500
요르단	641,900
타이*	609,900
케냐	534,900
차드	434,500
에티오피아	433,900
중국**	301,000
미국***	263,600

* 정부 추정치

** 약 300,000명의 베트남 난민들은 현지 통관국이 중국 정부로부터 실종자 보상을 받고 있다.

*** 유엔난민기구(UNHCR) 추정치

심한 균형을 이루어 집행할 필요가 있다.

2013년 말, 총 148개국이 1951년 유엔 난민협약 또는/혹은 1967년 의정서의 채택국이 되었다. (생부 정보는 1951년 난민협약에 관한 소책자 참고)

유엔난민기구 (UNHCR)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는 흔히 유엔난민기구로 불리며 1950년 유엔총회에서 설립되어 1951년 1월 1일 첫 업무를 시작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규정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사실상 동시에 작성되었으며, 이후 수십 년 간 이 협약은 난민 보호의 근간이 되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첫 임무는 2차 대전 이후 주로 유럽에서 터전을 잃은 수백만 명을 돕고, 이들을 위한 영구적 해법을 찾는 것이었다. 난민협약은 비호신청자가 박해를 받은 영토로 제약국이 이들을 추방하거나 강제로 송환하지 않도록 의무화하였다(농르플랑 원칙). 이는 확실히 중요한 발전이었으나 협약은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재개할 수 있도록 처우와 관련된 권리에 대한 접근과 기준을 명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해당 임무 완수에 3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새로운 난민 위기가 계속 발생하면서 임무는 계속 연장되었으며, 2003년 유엔총회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임무를 상설화하였다.

1967년 의정서는 기존 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주



“비준국들은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 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2011년 유엔난민협약 제 35항

로 유럽인들이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지리적 시간적 제약 제거하여 세계적인 난민 보호를 강화하였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도주의적 기관 중 하나로 8,000여 명의 직원이 123개국 449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 60년간 5천만 명 이상의 보호대상자를 지원했으며, 1954년과 198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카렌족 난민 아동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태국 북부 반마이나이소이 캠프(Ban Mai Nai Soi camp)에서 수업을 마친 후 놀고 있다.

2005년 안토니오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이 제 10대 고등판무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고등판무관은 경제사회위원회에 유엔난민기구(UNHCR)의 협업에 대해 보고하고, 매년 유엔총회에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전반적 업무에 관해 서면 보고서를 제출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프로그램은 현재 9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매년 제네바에서 연례 회의를 갖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며, 실무회의 또는 상임회의는 매년 수차례 개최된다.

이라크 난민 라스메이가
요르단에서 손녀를 안고
있다. 이들은 요르단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에
등록되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역할 발전

난민 보호는 여러 해 동안 유엔난민기구(UNHCR) 업무의 핵심이었다. 국제법적 틀의 추진과 확장, 비호 체계 개발과 강화, 보호 기준 개선, 영구적 해결 모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난민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많은 활동이 이에 포함된다.

2001년, 지난 반세기 동안 열린 가장 중요한 국제 난민회의에서는 1951년 난민협약에 대한 채택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념비적 선언이 채택되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국제적 합의 과정을 거쳐 “보호를 위한 안전”을 작성했고, 이는 세계적으로 난민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인도주의적 단체의 노력에 지침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을 위한 업무에 더해 세계적으로 무국적자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할 임무를 유엔(UN)으로부터 부여받아 무국적이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개인과 국가를 돕는다. 올해는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60주년을 맞아, 이 협약은 1961년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과 더불어 해당 업무에 대한 법적 기틀을 형성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또한 유엔의 “클러스터 접근법(cluster approach)”에서 주요 역할

을 하며, 난민과는 달리 전적으로 자신들의 안녕을 담당하는 단일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수 백만 명의 국내실향민을 다양한 기관과 함께 돕는다.



UNHCR ARCHIVES / 1951 / 1953

유엔난민기구(UNHCR)는 창설 당시 2차대전으로 인해 발생한 125만 명으로 추정되는 난민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입증된바 있는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한 난민들이 고향에서 정착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일하는 17세의 델로로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천 명에 달하는 무국적자 중 한명이다.

하도록 돕거나, 시리아 아랍 공화국, 콜롬비아, 이라크, 몽고민주공화국 같은 국가에서 국내실향민을 돕는 활동 등을 통해 실향 발생 국가에서 중요하고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2005년 파키스탄 지진, 2008년 중국 사천성 지진, 2013년 필리핀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주요 국제 구호 노력에도 기여해 왔다.

필리핀 태풍 하이옌 생존자들이 집을 복구하기 위해 잔해를 뒤지고 있다.





현트에서 폭독한 겨울을 맞이하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나눠줄 유엔난민기구(UNHCR) 담요 수천 장이 요르단에서 하역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영구적 해결책까지

위기대응은 유엔난민기구(UNHCR)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2013년, 시리아 사태를 피해 도망친 이들의 급박한 상황은 현재진행형의 큰 과제였으며, 아프리카에서는 긴급구호팀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탈출한 이들과 차드로 밀려드는 수단 난민들, 그리고 콩고에서 우간다로 도착하는 난민들의 보호와 납수단의 국내 실향 및 국경을 넘는 대량 실향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파견됐다.

2013년 주요 활동지역

국가명	비용 (단위:백만달러)
요르단	367.6
레바논	362.1
시리아 아랍 공화국	317.9
이라크	291.7
터키	225.6
케냐	251.6
남수단	220.2
에르가니스탄	131.4

위의 사례나 다른 많은 사례에서 최우선적 업무는 숙소, 식사, 식수, 위생, 의료 처치 등 기본적인 필요 충족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시리아 북동쪽 동계 물자 공수가 있다.

장기적인 난민 사태에서뿐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구체적인 보호상의 필요도 있다. 난민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여성과 아

이에 대한 보호 문제는 우선시되어야 하며, 교육, 성폭력 및 성별 기반 폭력 해결, 소년병 모집 위험



소말리아 난민 디하로 후세인 알리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귀환을 시작해도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리지 자신의 네 아이를 케냐에서 고향으로 데려와 달라고 요청했다.

을 포함한 수많은 아동 보호 문제, 인신매매 위험 등도 이에 포함된다.

도주의적 수용, 가족 재결합, 노동 이주, 지역 내 이동의 촉진 등의 계획들이 이에 포함된다.

난민과 그 외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는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정상적인 삶의 재건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인 영구적 해결책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보호 조치와 더불어 난민들이 누릴 자격이 있는 다른 기회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또한 진행 중이다. 인

자국으로의 자발적 귀환은 상황이 허락하면 대부분

의 난민이 선호하는 해법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교통편과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구호 물품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현금 지원과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농기구 및 씨앗 등의 실질적인 지원 등이 포함된다.

2013년 자발적 귀환 상위 5개국

국가명	귀환인
몽고민주공화국	68,400
이라크	60,900
에르가니스탄	39,700
소말리아	36,100
코트디부아르	20,000

패로는 많은 NGO 협력기관들과 함께 집을 재건하거나 학교, 병원, 도로, 다리, 우물 등 공동체의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원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업은 귀환하는 난민뿐만 아니라 국내실향민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지원은 또한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현장 직원은 민감한 상황에 놓인 귀환자들의 안전을 주시한다. 다른 기구들은 장기적 개발 지원을 제공한다.

2013년, 고국으로 돌아간 이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자발적 귀환민은 414,600명으로 지난 25년 동안 네번째로 낮은 수준이었고, 이 중 206,000명이 유엔난민기구(UNHCR)의 도움을 받았다. 자발적 귀환 상위 국가는 콩고

(68,400)를 시작으로 이라크(60,900), 아프가니스탄(39,700), 소말리아(36,100), 코트디부아르(20,000), 수단(17,000), 말리(14,300)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0년 간, 650만 명의 난민이 고국으로 돌아갔으며, 이전 10년 동안에는 약 1,460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갔다.

지역통합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들은 비호국에서의 자립을 목표로 삼고 지역에 통합될 수 있다. 복잡하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수용 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되어 국민이 누리는 것에 비견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며 이 과정이 비호국에서 영주권 획득으로, 그리고 최상의 상황에서는 시민권 획득으로



종전에 난민이었던 앙골라 사람들이 2014년 8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온 종전 난민 아동들이 미국에 재정착한 이후 켄터키주의 한 학교에서 영어수업을 받기 위해 모였다.

2013년 재정착국 상위 5개국

국가명	난민
미국	66,200
호주	13,200
캐나다	12,200
스웨덴	1,900
영국	970

이어져야 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각국 정부에 귀화 난민에 관한 데이터를 개선하도록 장려해왔지만, 여전히 부분적 통계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존

재하는 데이터로 봤을 때 지난 10년 간 적어도 716,000명의 난민이 비호국에서 시민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중 2/3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재정착

또 다른 영구적 해법은 제3국에의 재정착이다. 2013년, 전년도와 동일한 숫자인 총 27개국이 재정착 장소를 제공했다. 그러나 재정착 수요는 12대1의 비율로 가용 장소의 수를 계속해서 훌쩍 뛰

어닐었다. 2013년 주 수혜자는 미얀마(23,500), 이라크(13,200), 몽고(12,200), 소말리아(9,000), 부탄(7,100) 출신 난민들이다. 재정착 신청에 주류를 이룬 것은, 법적 또한/혹은 신체적 보호의 필

요(42%), 대안적 영구적 해결책의 부재(22%), 폭력 또한/혹은 고문 생존자(16%)의 세 가지 범주였다. 위험에 처한 여성과 여아가 전체 재정착 신청의 12% 이상을 차지했다.

해당 연도에 총 98,400명의 난민이 재정착 수용되었으며 90%는 미국, 호주, 캐나다에 재정착했다.(표 참조)

자주 묻는 질문들

■ 난민은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가?

난민은 비호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국제적 보호는 단지 신체적 안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난민은 적어도 사고의 자유, 이주의 자유, 고문과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여 특정 국가의 합법적 거주자인 다른 외국인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기본적인 권리와 지원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난민은 비호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 비호신청자와 난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개인이 자국에서 도망쳐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경우, 이들은 종종 공식적으로 비호를 신청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결정이 진행 중인 경우, 이들을 비호신청인이라 한다. 비호 제공이 결정된 경우, 이들은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으로 인정되었다는 뜻이다.

■ 정부가 도움을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특별한 경우, 적절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때 이들을 들어, 다수의 강제 이주인이 갑작스럽게 도착한 경우, 유엔난민기구(UNHCR)와 다른 국제기구는 식량, 도구, 임시 보호처, 학교, 병원 등을 지원한다.

■ 전쟁지역을 탈출한 사람들은 난민인가?

1951년 협약은 분쟁을 피해 도망친 민간인들이 분쟁 환경에서 박해받는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엔난민기구(UNHCR)의 오랜 입장은 분쟁의 무차별적 영향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은 자국이 이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거나 보호할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69년 난민에 관한 OAU협약과 1984년 중남미 카타헤나 선언과 같은 지역 조약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한다.



UNHCR / P. ROST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여성 난민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키에룬 바투리 병원 급식소에 앉아있다.



UNHCR / G. KOTICH

■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정부가 추방할 수 있는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추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엔 난민기구(UNHCR)는 이들이 추방되기 전, 재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정한 절차에 포함될 것을 주장한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결과가 해당 개인에게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전쟁범죄자나 테러리스트는 난민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전쟁범죄와 테러 행위를 포함한 국제 인도주의법과 인권법 위반에 연루된 자들은 난민에게 부여되는 보호에서 명확하게 제외된다.

■ 군인은 난민이 될 수 있는가?

민간인만이 난민이 될 수 있다. 비호국에서 무장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은 난민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나 무기를 내려놓은 군인이거나 전투병은 배제될 다른 이유가 없다면 차후 난민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 모든 난민이 난민지위인정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많은 나라가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박해에 대한 공포가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입증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수 십만의 난민이 발생하는 대규모 사태의 경우, 개별적 심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 전체가 '사실상 (prima facie)' 난민지위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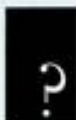
UNHCR / K. NGUYEN

■ “일시적 보호”는 무엇인가?

1990년대 구 유고슬라비아 분쟁에서와 같이 갑작스러운 대량 유입으로 정규 비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위험이 있을 때 국가는 때로 “일시적 보호”를 제공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신속히 안전한 국가로 수용될 수 있으나 영구 체류 보장은 제공되지 않는다. 임시 보호는 특정 상황에서 정부와 비호신청자 양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1951년 난민 협약이 제공하는 공식 난민 지위를 포함한 더 폭넓은 보호 조치를 보완할 뿐, 대체하지 않는다.

좌: 이라크 출신 비호신청자들이 터키를 통해 불가리아에 입국해 일차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파스트로고(Pastrogor)에 있는 임시보호소에 머물고 있다.

우: 유엔난민기구(UNHCR)직원이 우간다 남서부 노야카벤드 환송 센터(Nyakabende transit centre)에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온 난민들에게 증명서를 주고 있다.



질의를 받





2014년 6월 먼 동부 사막지대에서 시리아 국경을 넘어 요르단으로 들어오는 수백 명의 난민들.

유엔난민기구(UNHCR)의 운영 방식

자금조달

유엔난민기구(UNHCR)는 주로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가 간 기구나 기업, 개인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재정을 확보한다. 전체 필요 자금의 약 2%를 약간 상회하는 비용을 유엔의 일반 예산에서 지원받아 행정비용으로 사용하고, 텐트나 의

약품, 트럭, 항공 수송기 등 현물 구호 지원품도 수령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세계적인 필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며, 2013년에는 새로운 위기상황 때문에 당해 예산을 미화 53억 달러로 늘렸



UNHCR / J. KOHLER

다. 어려운 세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는 미화 29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받았으며 이는 2012년보다 미화 6억 4,700만 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필요 자금의 60%만을 충당할 뿐으로 큰 격차가 존재한다.

기구간 협력

기구간 협력은 유엔난민기구(UNHCR)에 매우 중요하다. 인도주의적 사태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유엔난민기구(UNHCR)는 함께 일하는 조직의



UNHCR / J. KOHLER

이라크 쿠르드족 지역(Kurdistan region) 에르빌(Erbil) 국제공항에서 비식량구호품(NFI)가 하역되고 있다.

수와 종류를 확대해왔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협력기구는 현재 740개가 넘는 국제 및 국내 NGO를 포함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또한 기관간 “플러스터” 접근방식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전문성을 보유한 특정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유엔 자매기관 중에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 유엔아약 범죄사무소(UNGIC)와 협력하고 있다.

그 외 유엔난민기구(UNHCR)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 적십자회 국제연맹(IFRC), 국제이주기구(IOM) 와도 친밀한 연대관계를 맺고 있다.

한눈으로 보는 통계 *

■ 일반

- 2013년, 전 세계적으로 5,120만 명이 분쟁과 박해로 인해 강제로 고향을 떠나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2013년 말, 유엔난민기구(UNHCR) 보호대상자 수는 4,290만 명으로 추정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난민 1,70만 명
 - 비호신청자 120만 명
 - 2013년 귀환난민 415,000명
 - 유엔난민기구(UNHCR)의 보호나 지원을 받은 국내실향민 2,390만 명
 - 2013년 출신지로 귀환한 국내실향민 140만 명
 - 확인된 무국적자 350만 명
 - 7억 보호대상자 836,000명
- 2013년 말,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 추정치에 따르면 260만 명에 가까운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있으며, 이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책임 하에 있는 전 세계 난민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달한다. 시리아 아랍 공화국이 두 번째로 큰 난민 출신국(250만 명)이며, 그 뒤를 소말리아(110만 명), 수단(65만 명), 콩고민주공화국(50만 명)이 뒤따른다.

■ 난민

- 시리아 분쟁을 탈출한 난민 중 다수는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터키로 피신했다. 요르단의 자타리(Za'atari) 난민촌은 요르단 내 제3대 "도시"의 규모로 커졌다.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의 수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로 늘어났다.
- 세계 최대의 난민촌은 케냐 북동부의 다답(Dadaab)이다. 22년 전 소말리아 내전을 피해 도망친 최대 9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문을 연 이래, 다섯 개의 난민캠프로 늘어나 35만 명 이상의 난민과 비호신청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난민촌에서 태어난 3세대 난민도 포함한다.
- 유엔난민기구(UNHCR)의 인구통계 정보 수집은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최우선사항으로, 시간이 지나며 데이터 수집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으며 특히 정부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말 유엔난민기구(UNHCR)는 56%의 보호대상자를 성별로, 42%를 연령별로 구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 비호신청자

- 2013년 한 해, 거의 110만 명이 167 개의 국가 혹은 영토에 있는 정부,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소에 비호 또는 난민 지위 신청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지난 십 년간 최고치를 보인다.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소는 2012년, 125,500건에서 급증한 203,200건의 신청을 등록했다.
- 2013년, 약 288,000명의 비호신청자들이 난민(213,400)으로 인정받거나 대안적 형태의 보호 지위(74,600)를 부여받았다.
- 독일은 2013년, 109,600건의 비호신청을 받아 신규난민신청을 가장 많이 등록한 국가였다. 미국의 신규신청건수(84,400)가 두 번째로 높았으며, 그 뒤를 남아프리카(70,000), 프랑스(60,200), 스웨덴(54,300)이 뒤따랐다.

* 본 통계는 별도로 유엔난민기구(UNHCR)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업무 하에 등록된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아랍 공화국, 서안과 가자지구에는 약 5백만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포함하지 않는다.

■ 국내실향민

- 2013년 말, 국내실향민의 수는 3,330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 유엔난민기구(UNHCR)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국내실향민의 수는 국내실향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2013년 말, 2,39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63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무국적자

- 2013년 말까지 유엔난민기구(UNHCR)는 75개국에서 350만여 명의 무국적자를 파악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무국적자의 실제 수는 최소 한 만 명으로 추정한다**.
- 적어도 37,700명의 무국적자가 2013년 한 해 동안 국적을 취득했다.

** 하지만 이 숫자는 무국적 현상의 전체적인 규모나 심각함을 보여주지 못한다. 상당수의 무국적자는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못했고, 아직도 많은 경우 무국적에 관한 통계자료가 없다.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출판:

UNHCR
Communications
and Public
Information Service
PO Box 2500
1211 Geneva 2
Switzerland

www.unhcr.org

추가 정보 및 문의:

Communications
and Public
Information Service
help@unhcr.org

난민 소녀들이 남수단
아중 토크 난민촌(Ajong
Thok refugee camp)의
임시 교실 텐트에서
책을 읽고 있다.

